

기안용지

(전화: 731-6393)

시행상  
특별취급

분류기호 문서번호	주개30321..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
수신처 보존기간	영구
시행일자	87. 7.

328

보조 기 관	건설관리국장 전결
	주택개발과장
	개발2계장
기안제임자	심관중(오석봉)

협 조 기 관	법무담당관 (고시안심사) 협조통제관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문 서 봉 제	1987. 7. 30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경 유 수 신 참 조	각 안 참 조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

발 신 명 의	시 장
------------------	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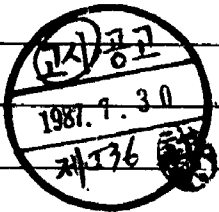


제 목 : 효창2 주택개발재개발구역변경(일부해제)에 따른 지적승인 및

(제 1 안) 내부결재

1. 건설부고시 제470호(73.12.1)로 주택개발되고 같은고시 제55호(81.2.20), 같은고시 제287호(85.7.5), 같은고시 제616호(86.12.27)로 구역변경(일부해제)결정된 효창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(도시계획에 관한지적등의 고시)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(권한위임)규정에 의거 별첨고시안 및 도서와 같이 지적승인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.

- 첨부 : 1. 고시안 1부  
2. 도면 1부



(제 2 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제목 : 관보제재의뢰

1. 효창2 주택개발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시행령 8조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제재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

<p>시기 바랍니다.</p>
<p>첨부 : 1. 고시안 사본 2부</p>
<p>(제 3 안)</p>
<p>수신 : 건설부장관</p>
<p>참조 : 도시개발과장</p>
<p>제목 : 같은건 (보고)</p>
<p>1. 건설부고시 제470호(73.12.1)로 구역결정되고 같은고시 제55호</p>
<p>(81.2.20), 같은고시 제287호(85.7.5), 같은고시 제616호(86.12.27)로</p>
<p>구역변경(일부해제)결정된 효창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및 같은법</p>
<p>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및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</p>
<p>첨부 : 1. 고시안 사본 1부</p>
<p>2. 도면 1부</p>
<p>(제 4 안)</p>
<p>수신 : 수신처참조</p>
<p>참조 : 주택과장</p>
<p>제목 : 같은건 (통보)</p>
<p>1. 건설부고시 제470호(73.12.1)로 구역결정되고 같은고시 제55호</p>
<p>(81.2.20), 같은고시 제287호(85.7.5), 같은고시 제616호(86.12.27)로</p>
<p>구역변경(일부해제)결정된 효창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</p>
<p>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및 고시하였기 통보하니</p>
<p>2. 관할구청장은 일반인에게 보이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차질없도록</p>
<p>할 것이며,</p>

3. 동구역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조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.

첨부 : 1. 고시안 사본 2부

2. 도면 2부

수신처 : 용산구청장, 마포구청장

(제 5 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

제목 : 같은건 (통보)

1. 건설부고시 제470호(73.12.1)로 구역결정되고 같은고시 제55호(81.

2.20), 같은고시 제287호(85.7.5), 같은고시 제616호(86.12.27)로 구역

변경(일부해제)결정된 효창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및 같은법시행령

제6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및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1. 고시안 사본 1부

2. 도면 1부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지적과장, 끝.

고 시 안  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고시심사	1987. 7. 27	24호
담당자	김영환	업무담당관
	김영환	

"효창2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(일부해제)에 따른 지적승인"

1. 건설부고시 제470호(73.12.1)로 구역결정되고 같은고시 제55호(81.2.20), 같은고시 제287호(85.7.5), 같은고시 제616호(86.12.27)로 구역변경(일부해제, 결정된 효창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개량과와 용산구청, 마포구청의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87. 7.

서울특별시장

가. 지적승인 조서

구역명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	비고
		기정	변경후	
효창2주택개량 재개발구역	용산구 효창동212번지일대 및 마포구 신궁덕동139번지일대	39,723	16,573	일부해제 23,150m <sup>2</sup>

나. 도면 : 서울특별시청 주택개량과와 용산구청, 마포구청의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.